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8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송영길 · 최혁진 · 허종식
김교홍 · 민병덕 · 박성준
서미화 · 한준호 · 김영호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전략투표가 발생하기 쉬워 소수정당의 성장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제약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와 협치를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

고 국민통합형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의 기반을 확대하며,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1호).

라. 대통령 결선투표 역시 본투표와 동일하게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마. 대통령 결선투표운동기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2회 이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항제1호).

바.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23日”을 “23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37일

제3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③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이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
거인명부는 해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일까지”를 “전일까지[제18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선투표확정일(개표결

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이하 “결선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2일 이내를 말한다”를 “2일,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16면 이내”를 “16면(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 8면)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중 “2일”을 “2일,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2일”로, “3일”을 “3일(결선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부터 3일 전)”로, “10일”을 “10일(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選舉運動其間중”을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1회 이내”를 “11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에는 각 1회 이내)”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운동기간중”을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회 이상”을 “3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 중에는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이 경우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구수×200원을 가산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말하며, 이하”로 한다.

제15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득표율순으로 하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후보자 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87조제1항 본문 중 “다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으로 한다.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이하 “대통령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대통령결선투표는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선투표 대상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대통령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8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은 해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8조의17제1항 전단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공관의 협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선거기간) ① 選舉別 選舉 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23日 <단서 <u>신설</u> > 2. (생 략) ② · ③ (생 략) 第34條(選舉日) ① 任期滿了에 의 한 選舉의 選舉日은 다음 各號 와 같다. 1. (생 략) < <u>신 설</u> > 2. · 3. (생 략) ② (생 략) < <u>신 설</u> >	제33조(선거기간) ① ----- -----. 1. -----23일. 다만, 제 <u>18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u> <u>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u> <u>는 37일</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34條(選舉日) ①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u>대통령결선투표는 선거일 후</u> <u>14일째 되는 날</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u> <u>선거일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u> <u>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u> <u>2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u> <u>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u>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 -----

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64조(선거벽보) ① (생략)

-----.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는 해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전일까지[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선투표확정일(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이하 “결선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64조(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② -----

-----2일,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는 결선투
표확정일 후 3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
역을 지정한다.

③ ~ ⑫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
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 ~ ⑤ (생략)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

--.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
음)

②-----

----16면(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 8
면) 이내-----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가. -----

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
 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
 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
 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
 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
 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
 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
 여 발송한다.

나. (생략)

2. (생략)

⑦ ~ ⑭ (생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
 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
 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에 의하여 選

 -----2일, 제18
 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
 령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
 정일 후 2일-----

 -----3일(결선
 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
 는 날부터 3일 전)-----
 -----10일(제187조의
 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
 투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선

學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回 2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1回 이내

2. (생략)

3. ~ 5. (생략)

② ~ ⑬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 -----

-----11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에는 각 2회 이내)

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 -----

-----3회 이상(결선

2. (생략) ② ~ ⑭ (생략)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u>인구수×950원</u> 2.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	<u>투표운동기간 중에는 2회 이상)</u> 2. (현행과 같음)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 -----. 1. 대통령선거 <u>인구수×950원. 이 경우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구수×200원을 가산한다.</u>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u>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말하며, 이하</u>----- -----
--	---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者의 掲載順位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④ ~ ⑩ (생략)

第187條(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國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1人인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總數의 3分の 1 이상에 달하여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통지에 의하여 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

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득표율순으로 하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후보자 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第187條(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 -----

-----과반수-----

-----.

<삭 제>

③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
된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
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
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
표(이하 “대통령결선투표”라 한
다)를 실시한다.

② 대통령결선투표는 대통령선
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
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선투표 대상 정수
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당 후보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
령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
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
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보자
가 1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득표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
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
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대통령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

 -----. 다만, 대통령결선투표
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선거인
명부등은 해당 결선투표가 끝

② ~ ④ (생략)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⑨ (생략)	<u>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 ----- ----- -----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다만, 대통령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	--